

제35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5. 1. 24.(금)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79
제출일자	2025. 1. 10.
회부일자	2025. 1. 14.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남정해)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황명강 의원 외 20명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7조)

4. 관계법령: 붙임

5.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의견 반영

나.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 유발요인 없음

라. 해당부서 의견: 의견 없음(민생경제과)

리.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7.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가맹사업 본사(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는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에 관한 목적으로 적절해 보임.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고 있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경우

2)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 안 제3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는 지역 내 발생하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가맹점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였음.

• 협의회의 구성

-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동수로 구성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협의회)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조정원 협의회는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는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는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⑦ 조정원 협의회는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⑨ 조정원 협의회는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임원·직원으로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의 임원·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 하도록 규정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 협의회의 회의

- 협의회 회의는 전체 회의 및 소회의로 구성되며, 각 회의의 심의 의결사항,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였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2. 협의회 운영세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협의회의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이 조정사항의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규정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협의회 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안 제5조(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에 대한 인원 및 담당자를 규정한 것으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해 보임.

- 간사 1명(업무 담당 과장), 서기 1명(업무 담당 사무관)

○ 안 제6조(공정화 법률지원단)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대적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해 보임.

○ 안 제7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기 않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해 보임.

1.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
2. 공정거래 정책 세미나 등 개최
3. 소모임 운영 및 홍보

○ 부칙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공포 후 가맹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두기 위해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지원단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 현황¹⁾을 보면 가맹점 간의 분쟁 사건 접수 실적이 2021년 490건에서 2022년 489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하였지만, 2023년에는 605건으로 전년 대비 116건, 23% 증가하고 있으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사건접수 실적(2021~2023년)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소 계	9,221	2,894	2,846	3,481
공 정	3,511	1,054	1,085	1,372
가 맹	1,584	490	489	605
하도급	2,800	855	901	1,044
유 통	88	31	28	29
약 관	989	393	257	339
대리점	249	71	86	92

- 가맹사업거래 신청이유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전체 가맹거래 분쟁조정사건 605건 중 253건으로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 자료제공 : 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사업거래 신청이유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결과(2023년)

신청이유	처리현황 및 유형				
	계[A+B+C]		성립(건) [A]	불성립(건) [B]	종결(건) [C]
	건수	비중(%)			
불공정거래행위	253	42	121	15	109
- 거래상 지위남용	98	16	38	6	47
-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132	22	71	7	58
- 거래거절	14	2	7	1	3
- 구속조건부거래	9	1	5	1	1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98	16	37	16	42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70	12	29	10	27
영업지역 침해	33	5	12	7	12
기타	151	25	64	14	60
계	605	100	263	62	250

-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지역별 접수 현황을 보면,
 - 2023년 605건 접수 중 피신청인 소재지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이 506건(83.6%)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북은 5건(0.8%)를 차지하고 있고,
 - 신청인 소재지로 보면 수도권이 309건(5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은 29건(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지역별 접수 현황(2023년)

* 기타: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피신청인 소재지	접수 현황(건)	신청인 소재지	접수 현황(건)
서울	378	서울	104
인천	16	인천	41
대전	12	대전	23
대구	5	대구	20
부산	21	부산	29
광주	5	광주	27
울산	2	울산	11
세종	1	세종	11
제주	1	제주	11
경기	112	경기	164
강원	-	강원	18
충북	19	충북	22
충남	9	충남	26
전북	3	전북	20
전남	6	전남	19
경북	5	경북	29
경남	8	경남	30
기타*	2	기타*	-
계	605	계	605

- 이에, 지역의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의 접근성 및 효과성을 증대하여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련 조정원 및 타 시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

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⑦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⑨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다(안 제4조)
 - 협의회 심의에 따른 참석 등 수당
- 도지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안 제6조)
 - 법률지원단 운영에 따른 수당
- 도지사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안 제7조)
 -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 공정거래 정책 세미나 등 개최, 소모임 운영 및 홍보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6조의 공정화 법률지원단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에 해당
 - 협의회 참석수당, 법률자문단 운영 등 일반운영비 10,000,000원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기술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에 해당.

4. 작성자

-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유승희 (054-880-2612)



경 상 북 도



수신 민생경제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1. 민생경제과-9304(2024.12.26.)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시행에 따라 위원회 운영으로 일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요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서도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근거의 임의적 성격 및 재정수반이 예측되는 사업 종류가 열거되어 있을 뿐 비용추계에 필요한 금액, 규모 등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안 내용이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 다만, 조례 시행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이 예측되는바, 재정 부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에 반드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예 산 담 당 관 세

주무관	윤종모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전길	2024. 12. 30.
협조자					차순애	
시행	예산담당관-16742	(2024. 12. 30.)		접수	민생경제과-9814	(2024. 12. 31.)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풍천면 도청대로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369	/	lackof2pro@korea.kr	/ 비공개(5)

아이도 행복이도 희망이도 미래도